

「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발 의 자: 장미경, 강승수,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,
김영태, 김재우, 박교상, 박세채, 신용하, 이명희,
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, 정지원, 추은희, 허민근 의원(18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·정밀화·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
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의된
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,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ICT¹⁾ 및 4차산업 기술의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

1) ICT: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며 정보를 수집·생산·가공·활용하는 모든 기술